

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현재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학교보안관을 국공립

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특수학교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6조제2항 및

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

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

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학교보안관의 운영대상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

배치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

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